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적(敵) 외의 외국 등을 위한 군사상 이익 등 제공죄 추가〉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0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27.
3. 회 부 일 : 2025.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적(利敵)의 죄’를 ‘적’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군용시설 제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제2장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¹⁾하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제14조 제8호에 따라 ‘적’과의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제80조²⁾의 군사기

1)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2)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누설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적국 외의 외국 등에 대한 일반이적 행위 또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일반이적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제 21450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 9. 13. 시행 예정인바,³⁾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법」과 이 법(「군형법」)의 관계⁴⁾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건요소를 규율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

현행	개정안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u> 제15조(미수범)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이 법(「군형법」)에서 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죄 신설 여부와 법정형 등 그 구체적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의처
02)6788-5055

- 3)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 예정)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 4) 이 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군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 특별형법임.